
- 2018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2018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2건	주의 6 시정 16		6,191,472		
1	●●●	2017~ 2018	보험료 사후정산 및 설계변경 원가계산 부적정	시정	감액	330,000		
2	●●●	2016~ 20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3	●●●	2018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시정				
4	●●●	2017~ 201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5	●●●	2017~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35,000		
6	●●●	2016~ 2018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7	○○○	2018	건설공사(용역)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488,000		
8	○○○	2017~ 2018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166,500		
9	○○○	2016~ 2018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시정				
10	○○○	2017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49,040		
11	○○○	2017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20,000		
12	○○○	2017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3,252,455		
13	○○○	2016~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60,000		
14	○○○	2016~ 2018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419,789		
15	○○○	2017~ 2018	시설공사 계약 건설업 등록면허 적용 부적정	주의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16	●●●	2017~ 2018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17	●●●	2018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30,000		
18	●●●	2017~ 2018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시정				
19	●●●	2016~ 2018	시설공사 계약 건설업 등록면허 적용 부적정	주의				
20	●●●	2018	월액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추급	53,000		
21	●●●	2017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20,000		
22	●●●	2017~ 2018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1,067,688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330,000원

【제 목】 보험료 사후정산 및 설계변경 원가계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 - 3건				△ 330		
◇◇◇ 산◆◆번지 석축설치공사	'17.09.08.	'17.09.12. ~'17.10.24.	12,127	△ 251	(주)▽▽▽▽▽ ▽▽▽	
□□□ □□통 ■■■ ○○○○ 정비공사	'18.06.07.	'18.06.08. ~'18.07.22.	12,902	△ 32	(주)@@@@ ###	
△△△ △통 ▲▲▲▲뒤 ★★★★ 정비공사	'18.07.20.	'18.07.23. ~'18.09.05.	15,490	△ 47	(주)\$\$\$\$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장 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7.09.08일 (주)♠♠♠♠♠ ♠♠♠과 계약체결 시 공한 「♡♡♡ 산♡♡번지 석축설치공사」에 대하여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의 납부확인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변경 시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251천원을 과다 집행하였다.

또한, 2018.06.07일 (주)♥♥♥♥♥ ♣♣♣과 계약체결 시 공한 「♣♣♣ ♣♣ 통 ○○○ ◆◆◆ 정비공사」외 1건에 대하여 착공신고서의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를 발주내역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요율적용으로 정산 및 설계변경시 79천원/2건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보험료 미정산분과 설계변경 시 과다 계상된 330천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10건			4,925,470		
2016.12.16	2017년 @@ ### %%준비 간담회 오찬	14명	유관기관 11명	420,000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2017.01.01	2017년 \$\$\$ %% 참석자 격려 만찬제공	60명	자원봉사자 49명	420,000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2017.06.29	***** 회의 오찬	10명		99,00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2017.07.13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1식	28㎡	416,350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2017.11.01	☐☐☐☐(&통) 도로반사경 설치	2개		1,448,000	재료비	시설비
2017.11.24	대부료(☐☐☐☐ ***-**)납부	1식	28㎡	417,180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2017.12.20	☐☐☐☐(**통) 도로반사경 설치	1개		724,000	재료비	시설비
2017.12.18	2017년 ☐☐☐☐☐☐ 통신요금 지출(7~12월)			200,64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2017.12.18	2018년 @@ \$\$\$ %%준비 간담회 오찬	16명	유관기관 13명	480,000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2018.09.18	2018년 ㉮㉮㉮㉮㉮ 통신요금 지출(2~9월)			300,3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로 구분하고,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구분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비(401-01)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비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¹⁾에게 지급하는 식비(특근매식비 단가 적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2건 833천원의 토지 임차료를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집행하였고, '▣▣▣ 도로반사경 설치' 2건 2,172천원의 도로시설물 제작설치비를 재료비 과목에서 집행하였으며, '♥♥♥♥♥ 통신요금' 2건 500천원을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통신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다.

또한, '♠♠ ### \$\$ 준비 간담회 오찬' 등 4건 1,419천원을 집행하면서 행사운영비 항목은 공무원에게만 식비 지급이 가능함에도 유관기관 및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오찬비용을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목적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현황

계약일자	집행내용	계약금액(원)	계약상대자	인지세(원)
계	2건	33,815,000		
2018.08.23	○○○행정복지센터 @@ (###) 설치	15,000,000	◆◆◆◆(주)	20,000
2018.09.10	2018년 추석명절 어려운이 웃 위문품 구입	18,815,000	삼척시□□□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²⁾)을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추석명절 어려운이웃 위문품 구입' 등 2건 33,815천원을 계약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수입인지를 제출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2018.10.17.)까지 전자소인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당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소인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적 소인처리는 gov.e-revenuestamp.go.kr에서 수행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비 고
계	10건		4,186,000	
2017.01.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비	458,000	인당 40천원 계상
2017.03.2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비	440,000	인당 40천원 계상
2017.05.1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원 회식비	340,000	인당 40천원 계상
2017.06.2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름 관광철 맞이 ○○ ○○○과의 만찬간담비	400,000	인당 35천원 계상
2017.08.2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비	359,000	인당 40천원 계상
2017.12.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송년회식	480,000	인당 40천원 계상
2018.01.0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481,000	인당 40천원 계상
2018.01.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의 간담 만찬	499,000	인당 35천원 계상
2018.04.0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342,000	인당 40천원 계상
2018.08.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387,000	인당 35천원 계상

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2017.09.2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석명절 직원격려품 구입	612,000

2.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나. 또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회식' 10건 4,186천원을 집행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1인당 집행금액이 3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1인당 35~40천원으로 계상하여 품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1건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접대성경비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5,000원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2건					미소화 35 초과소화 5
2017.03.24	&&& **통(### **번지 일원) 석축설치공사	(주)▶▶▶▶▶	13,332	335	330	-5
2018.08.27	@@@ *통 ○●○●○뒤 정비공사	(주)◀◀◀◀◀	15,490	350	385	3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통 석축설치공사’ 등 2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35천원을 미소화하고, 5천원을 초과소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3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연 도	건 수	지출금액	비 고
2016 ~ 2018년도	25건	11,420,000	대표자 일괄지급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령 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³⁾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5건 11,420천원의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자동이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통장협의회장 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88,000원

【제 목】 건설공사(용역)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2건				△ 488		
@@*리(##) \$\$\$ 농로 확포장공사	'18.10.11.	'18.10.19. ~'18.12.02.	15,300	△ 37	▶▶▶▶(주) ▷▷▷	
&&*리(!) ㄷㄷㄷ 농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8.10.10.	'18.10.11. ~'18.11.24.	3,876	△ 451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2018.09.19.일 ♠♠♠♠ ♡♡♡과 계약 체결한 『2018년 @@@ 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용역』 성과 결과에 의거 자체 설계한 “##*리(\$\$) %%% 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토공수량 산출시 (No.1~No.4+13) 지점에 대한 굴착 구간을 절토 공종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터파기 공종으로 착오(일반적으로 토공물량 산출시 원지반선을 기준으로 절토(절취)는 측방으로의 굴착시 적용되며, 터파기는 수직하향 20cm이상 굴착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과다적용 되었으며,

“##*리(\$\$) %%% 농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폐기물 운반단가 산정시 「폐기물처리단가 및 운반비 적용단가」에 근거하여 거리별 부피기준(m³)과 중량기준(톤)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량기준(톤)만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총 488천원/2건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용역)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설계서 작성 시 과다 계상된 488천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공사가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66,50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원)

연번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도	사업소 면적 (㎡)	세율 (㎡당)	세액	비고
계	2건					166,500	
1	♠♠♠♠ (*****- 1*****)	◇◇◇◇◇◇◇◇ (◆◆◆◆◆◆◆◆ ***-**번지)	2017	333.54	250	83,250	
2	♠♠♠♠ (*****- 1*****)	◇◇◇◇◇◇◇◇ (◆◆◆◆◆◆◆◆ ***-**번지)	2018	333.54	250	83,250	

※ 가산세 별도 계산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사업소를 두고 재산분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2건 166,5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누락한 주민세(재산분) 166,500원을 징수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집행내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인지세
계	15건	185,526		
2016.10.13	☆☆☆ ** 쓰레기 청소 용역	12,210	◆◆◆◆	20
2016.10.13	☆☆ **쓰레기 정리 및 운반용 장비 임차	10,285	□□□□(주)	20
2017.03.14	2017 마을앰프 교체 및 시설정비	12,580	■ ■ ■ ■ ■ ■ ■ ■	20
2017.04.03	☆☆☆ ★★★ LED등 교체 (@@,##,\$\$,%%)	10,830	△△△△	20
2017.05.12	★★★ &&&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	13,120	▲▲▲▲▲▲▲▲	20
2017.05.20	○○○ ○○○(●●●●)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	10,890	▽▽▽▽	20
2017.05.22	◎◎*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13,702	▼▼▼▼▼▼	20
2017.05.30	◇◇*리(@@) 안전휀스 및 석축설치공사 관급자재(디자인올타리)	10,180	☆☆☆☆☆☆	20

매하는 인터넷사이트⁴⁾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5건 185,526천원을 계약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수입인지를 제출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2018.10.25.)까지 전자소인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당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소인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적 소인처리는 gov.e-revenuestamp.go.kr에서 수행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49,040원

【제목】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이장수당 초과지급 현황

연번	성명 (마을명)	해촉일	집행내용	지급내역(원)		
				지급액	정당액	차액
계	2건					149,040
1	○○○○ (@@@*리)	2017.07.11	7월 이장수당	200,000	70,960	129,040
2	○○○○ (@@@*리)	2017.07.11	7월 하반기 이장회의 수당(7.19개최)	20,000	0	20,000

나. 이장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연 도	건 수	지출금액	비 고
2016 ~ 2018년도	23건	17,460,000	대표자 일괄지급

2. 내 용

가.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통장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일반보상금 항목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하며,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및 상여금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통장·이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19일 변경됐을 경우

┌전임자 : 200,000원÷31(1.1~1.31)일×19일(1.1~1.19)일=122,580원

└후임자 : 200,000원÷31(1.1~1.31)일×13일(1.19~1.31)일=83,870원

나.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령 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⁵⁾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 *리장 사퇴서를 7.11일자로 수리하였음에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였고, 해촉일 이후에 7월 하반기 이장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3건 17,460천원의 이장 회의 참석수당을 협의회 정관에 하반기 이장 회의참석수당을 회비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당채주가 아님에도 이장협의회 총무 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 이장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초과 지급한 이장수당 149,040원을 회수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20,000원

【제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계	6건		76,709,000	120,000
2017.05.29	@@*리 배수로 정비공사	(주)☒☒☒☒	11,831,000	20,000
2017.06.20	##*리 계단설치공사	★★★★(주)	10,785,000	20,000
2017.09.28	\$\$\$ 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시설 공사	○○○○○○	10,990,000	20,000
2017.10.24	&&*리 ☒☒☒☒ ☒☒☒☒(##) 구입설치	●●●●(주)	19,890,000	20,000
2017.11.13	\$\$*리(&&) 농로 포장공사	(주)○○○○	10,613,000	20,000
2017.12.13	@@*리 ☒☒☒ 기반정비 공사	◆◆◆◆	12,600,000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6건 76,709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인지세 120,000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12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2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3,252,455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연도	계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비고
	건	금액(원)	건	금액(원)	건	금액(원)	
2017년	11건	3,252,455	4건	226,926	7건	3,025,529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1건 169,091천원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하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용내역과 상이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준공정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3,252,455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붙임]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연번	지출일자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원)	비고
계		11건		169,091		3,252,455	
1	2017.03.13	@@@*리 배수로복개 및 농로정비공사	(주)◆◆	18,289	폐기물 처리비	1,306,020	증빙없음
2	2017.03.20	###(\$\$) 농로포장공사	(주)□□□□	18,331	폐기물 처리비	25,467	증빙없음
3	2017.04.13	%%*리(&& 가각정비 및 다이크 설치공사	(자)■ ■ ■ ■ ■	12,968	환경 관리비	65,712	증빙 부적정 (사용내역과 증빙영수증 상이)
4	2017.04.14	@@*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자)■ ■ ■ ■ ■	14,187	환경 관리비	72,839	증빙 부적정 (상기 공사와 동일 증빙)
5	2017.04.27	\$\$\$ (***) 석축정비공사	(주)△△	15,304	환경 관리비	11,129	실계변경 전 금액으로 정산
6	2017.04.27	##*리(%%%, &&&) 물탱크 설치공사	(주)▲▲ ▲▲▲▲▲	14,129	환경 관리비	77,246	증빙없음
7	2017.05.18	@@ *,*리 농로 포장공사	(주)▽▽	9,960	폐기물 처리비	407,472	증빙없음
8	2017.05.19	##*리(\$\$) 구거 정비공사	(합자) ▼▼▼▼	18,056	폐기물 처리비	25,467	증빙없음
9	2017.06.14	%%*리(&& 가둔지 배수로 정비공사	◀◀◀◀(주)	18,287	폐기물 처리비	31,436	증빙없음
10	2017.09.11	@@*리(##) \$\$\$\$\$\$ 정비공사	▷▷▷▷(주)	17,892	폐기물 처리비	866,172	증빙없음
11	2017.09.11	%%*리, &&*리 가각 정비공사	(주)▶▶	11,688	폐기물 처리비	363,495	증빙없음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8건		38,525			미소화 60 초과소화 40
2016.10.06	@@*리 농로계단 설치공사	☞☞☞☞☞☞	2,110	40	50	10
2017.03.13	### **리 교량확장 및 농로정비공사	(주)♣♣♣♣	10,545	265	260	-5
2017.07.13	\$\$\$ *리 ♡♡♡ 출입구 방충망 설치공사	◎◎◎◎	660	15	-	-15
2017.07.19	%%*리 &&&&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	◆◆◆◆	1,100	40	25	-15
2017.08.07	@@ ♠♠♠♠♠♠ 복토장 흙 운반용 장비 임차	▣▣▣▣	1,320	35	30	-5
2017.09.28	♡♡♡ 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시설 공사	●●●●●●	10,990	250	270	20
2017.11.10	@@*리 ♥♥♥♥♥ 옆 운동기구 철거 이설공사	(주)○●●●	1,000	15	25	10
2018.04.09	@@*리 ### 기반정비공사	▤▤▤▤	10,800	250	270	20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8건 38,525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60천원을 미소화하고, 정당액보다 40천원 초과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6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19,789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황

기준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 고
계		419,789	
2018.10.24.	4140-****-****-****	155,914	BC TOP
	9430-****-****-****	263,875	유류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6. 10월부터 2018.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419,789 원(BC TOP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419,789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시설공사 계약 건설업 등록면허 적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도급업체	계약면허	적정면허
3건						
@@@*리 소교량 가설 공사	'17.04.10.	'17.04.12. ~'17.05.09.	18,510	(주)▣▣▣ ▣▣▣▣▣▣	시설물 유지	철강 재설치
##*리 배수로 및 석축 정비공사	'17.11.09.	'17.11.15. ~'17.12.29.	16,660	●●●● (유)	석공	철콘
\$\$\$리(%%) &&& 농로포장 공사	'18.05.08.	'18.05.14. ~'18.06.27.	19,284	(유)●●	철콘	석공

2. 내 용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 공사등)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에서는 공사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리 소교량 가설공사’의 2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에도 「건설산업 기본법」과 다르게 3건의 전문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민원사무처리 지연 현황 : 12건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

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장애인등록’ 등 12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 내 민원처리가 힘들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처리기한 내 신속히 처리하였음에도 시스템 입력지연으로 처리기한을 넘겨 완결처리 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시 관련 법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사무처리 지연 현황

민원명	민원인	담당자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비고
계	12건						
장애인등록	@@@	♡♡♡	'17.11.07	'17.12.18	'18.01.12	25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7.11.08	'17.12.05	'17.12.19	14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7.12.01	'17.12.29	'18.01.10	12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7.12.07	'18.01.05	'18.01.08	3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8.01.31	'18.03.02	'18.03.22	20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8.02.14	'18.03.16	'18.03.22	6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8.05.08	'18.06.05	'18.06.12	7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8.05.08	'18.06.05	'18.06.11	6일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18.05.08	'18.06.05	'18.06.11	6일	
장애인등록	▶▶▶	♡♡♡	'18.06.21	'18.08.01	'18.08.13	12일	
장애인등록	♠♠♠	♡♡♡	'18.07.09	'18.08.20	'18.09.07	18일	
장애인등록	♠♠♠	♡♡♡	'18.08.28	'18.10.15	'18.10.18	3일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30,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과금액(원)			비 고
				기준액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계	2건						30,000원 과다부과
1	☞☞☞ (**,**,**)	'18.07.17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1개월 이내)	20,000	16,000	4,000	12,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 (**,**,**)	'18.07.20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24,000	6,000	18,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2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경 없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만 적용하여 30,000원을 과다부과 함으로써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부과·징수한 주민등록 과태료 30,000원을 환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과태료 감경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전자소인처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집행내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인지세
계	3건	39,597		
2017.12.26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	15,360	◆◆◆◆◆◆◆◆	20
2018.04.17	##*통(\$\$) ●●●● 보수공사	13,782	■■■■	20
2018.04.26	%%*통 배수로덮개 설치공사 관급자재 (스틸그레이팅)	10,455	●●●●(주)	2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⁷⁾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3건 39,597천원을 계약하면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전자수입인지를 제출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2018.10.31.)까지 전자소인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당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소인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자적 소인처리는 gov.e-revenuestamp.go.kr에서 수행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시설공사 계약 건설업 등록면허 적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 예정금액	도급업체	계약면허	적정면허
7건						
@@@ ### \$\$\$\$\$ 옆 소하천 복개 공사	'16.11.16.	'16.11.17. ~'16.12.15.	26,746	(주)◁◁	석공	철근 콘크리트
%%*통(●●●●●●일원) 법면 정비 공사	'17.04.07.	'17.4.12. ~'17.5.10.	17,935	◀◀◀◀ (주)	석공	토공
&&**통 目目目目目目目 뒤 배수로 정비공사	'17.06.22.	'17.6.26. ~'17.7.24.	37,047	(주)▷▷	석공	철근 콘크리트
@@**통(###) 배수로 및 측구공사	'17.09.20.	'17.9.22. ~'17.11.5.	15,700	(주)▶▶	석공	철근 콘크리트
\$**통 산사태 위험지역 사면보강 공사	'17.09.21.	'17.9.25. ~'17.11.8.	19,660	(주)♠♠	철근 콘크리트	석공
%%*통(&&&) 배수로 및 *** 석축 설치 공사	'18.05.18.	'18.5.23. ~'18.7.6.	22,170	♠♠♠♠(주)	석공	철근 콘크리트
@@*통 #### 배수로 확포장 공사	'18.05.24.	'18.5.24. ~'18.7.7.	17,880	주식회사 ♥	시설물 유지	철근 콘크리트

2. 내 용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 공사등)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에서는 공사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 ### \$\$\$\$\$ 옆 소하천 복개 공사’외 6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건설산업 기본법」과 다르게 7건의 전문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급 53,000원

【제 목】 월액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급일	집행내용	대상자	관내출장 일수	지급액	정당액	차액	비고
계			4건				53	
1	2018.05.04	4월 월액여비	☺☺☺	11일	165	176	11	1일당 16천원
2	2018.07.03	6월 월액여비	♣♣♣	15일	225	240	15	
3	2018.07.03	6월 월액여비	◎◎◎	15일	225	240	15	
4	2018.07.03	6월 월액여비	◆◆◆	12일	180	192	12	

2. 내 용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

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한 문서[기획감사실-4185(2018.4.2) 「2018년도 월액여비 지급기준 개선 사항 알림」]에 따르면 월액여비 지급한도액을 월 225천원에서 월 240천원으로 증액하고, 2018년 4월 상시출장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건의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월액여비 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미지급한 월액여비 53,000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7.07.27	@@**동 ■■■■■■■■■■■■■■■■■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이중벽관)	●● ●●●●●	12,720,000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건 12,720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인지세 20,000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2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067,688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연번	지출일자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원)	비 고
계		6건		218,407		1,067,688	
1	2017.05.12	@@@ ### 주변 배수로 설치공사	☆☆☆☆(주)	15,650	폐기물 처리비	169,690	증빙없음
2	2017.05.23	\$\$\$ 석축쌓기 공사	주식회사 ★★	22,170	환경 관리비	85,204	정산 부적정 (집행비용 부족)
3	2017.10.20	%**통(&&& 배수로 및 측구공사	주식회사 ★★	12,010	폐기물 처리비	87,068	증빙없음
4	2017.11.17	@@**통 산사태위험지역 사면보강공사	(주)○○	19,500	폐기물 처리비	93,613	정산 부적정 (처리톤수 부족)
5	2018.03.16	\$\$*통 &&& 신축공사(기계설비)	●●●●●(주)	14,657	폐기물 처리비	18,480	증빙없음
6	2018.03.23	@*통 ### 신축공사(건축)	(주)○○○○○	134,420	환경 관리비	484,581	정산 부적정 (청소인건비는 비적용대상)
					폐기물 처리비	129,052	증빙없음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6건 218,407천원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하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비용과 다르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청소인건비는 환경관리비 정산 비적용대상임에도 준공정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의거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1,067,688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